
RCEP 활용 비즈니스 모델

국제원산지정보원

정책연구팀 윤호성

2022.01.18

1. Intro : RCEP 원산지규정 특징(원산지결정기준 관련)

2. RCEP 비즈니스 모델

- PSR 완화를 통한 수출 확대 모델
- 역내영역 확장으로 인한 원산지충족 용이성 증가 모델
- 양허세율 차이로 인한 역내 경합 산업(품목) 수출확대 전략
- 연결원산지증명을 통한 직접운송 충족 완화 및 물류비용 절감 전략

Intro : RCEP 원산지규정 특징(원산지결정기준 관련)

■ 불인정공정 관련

한.싱	한.아세안	호주	한.중	한.뉴	한.베	RCEP
운송.저장 위한 보전 작업 - 판매 위한 포장	운송.저장 위한 보전 작업 - 판매 위한 포장	운송.저장 위한 보전 작업 -	운송.저장 위한 보전 작업 -	운송.저장 위한 보전 작업 -	운송.저장 위한 보전 작업 -	운송.저장 위한 보전 작업 선적.운송 촉진 작업 판매 위한 포장.전시 작업
부품 단순조립 물 등 희석, 염화, 가당, 단 순혼합 단순절단, 박편, 압착, 분쇄, 연질화 도축	부품 단순조합 당류 착색, 표백, 단순혼합 단순절단.분쇄 도축	부품 단순조립 세척, 세탁, 표백, 단순혼 합,단순절단.연마, 단순분 쇄.파쇄	부품 단순조립 포장의 변경 해체 및 조립 단순절단.연마, 단순분쇄 도축	포장의 변경 해체 및 조립 단순절단.연마, 단순분쇄 단순한 조립 및 분해	부품 단순조립 ·포장의 변경 해체 및 조립 단순절단.연마, 단순분쇄 당류착색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단순한 조립 및 분해 도축	감별, 체질, 선별, 분류, 연 말, 절단, 조개기 , 분쇄, 구 부리기, 감기 또는 풀기로 구성되는 단순가공 분해 도축 부품 분해
탈피, 탈각, 탈곡, 뼈제거 -	탈피, 탈각, 씨제거, 연마, 도정 -	- -	탈각, 부분 또는 전체, 전체 표백,연마 및 동정,탈피, 씨 제거 및 탈각	- -	탈피, 씨 제거, 및 탈각 세탁, 세척	단순 탈피, 씨 제거 또는 탈 각
분류 시험.측정, 품질검사	선별, 체질, 분류, 등급화, 구분 단순 시험.측정	-	감별, 체질, 선별, 분류, 등 급화 또는 매칭, 조개기 , 시험 측정	- -	감별, 체질, 선별, 분류, 등 급화 또는 매칭 시험 측정	감별, 체질, 선별, 분류
건조, 냉장, 냉동, 염수장 -	- -	- -	건조, 냉장, 냉동, 염수장 -	- -	- -	- -
먼지제거, 녹방지, 도포 - 분해, 포장 해체.조립.병입 표시부착 세트구성	녹.기름 등 제거, 도포 단순도장, 광택 포장, 포장 해체.조립, 병입 표시부착 세트구성, 분해	세탁 세척 또는 먼지 녹 기 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 제거 ·단순한 넣기, 판에 붙이기 포장 공정 ·분해 ·재분류 ·구별 표시 및 부착 인쇄	녹.기름 등 제거, 도포 단순도장, 광택 포장, 포장 해체.조립, 병 입 표시부착 세트구성, 분해 구부리기, 감기 또는 풀기	세탁, 세척,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 제 거, 단순절단- 분해, 포장 해체.조립 표시부착	세탁, 세척, 먼지 녹 기름 페 인트 또는 그 밖의 막 제거 단순 페인팅 및 광택 표시부착인쇄 포장, 포장 해체.조립	단순 페인팅 및 광택 표시부착인쇄 및 부착
-	<섬유 별도 규정> 단순결합, 다림질, 세탁 총횡 재단, 끝단 봉제 끈.장식품 등 결합 최종공정 수행 위한 탈색 등 5% 미만 자수	- -	.방직용 섬유 다림질.압착 -	- -	- -	- -
상기 작업의 조합	상기 작업의 조합	- -	상기 작업의 조합	- -	- -	상기 작업의 조합

■ 부가가치기준

아세안, 베트남, 호주, 뉴질랜드, RCEP	중국, 싱가포르
공제법, 집적법	공제법

■ 최소허용수준

구 분	가격기준으로 최소허용수준 산출			중량기준 산출
	기준가격	일반품목	농축수산물(제1류~제24류)	섬유류(제50류~제63류)
싱가포르	관세가격	10% 이하	1류~14류 적용제외 15류~24류 CTSH 충족하면 10% 이하	8% 이하
아세안	FOB	10% 이하		10% 이하
호주	조정가치	10% 이하	1류~14류 CTSH 충족하면 적용가능 10% 이하(일부품목적용 제외)* 15류~24류 10% 이하	10% 이하
중국	FOB	10% 이하	1류~14류 적용 불가 15류~24류 CTSH 충족시 10% 이하	10% 이하 (중량 또는 가격기준)
베트남		10% 이하		
뉴질랜드		10% 이하	1류~14류 적용가능(단순한 혼합을 초과하는 공정) 10% 이하 15류~24류 10% 이하	
RCEP	FOB	10% 이하		10% 이하

■ 소매포장용기

구분	원산지별로 구분 하는 협정
부가가치 기준 적용시 고려 세번변경기준 적용시 미고려	싱가포르, 아세안, 호주, 중국, 베트남, 뉴질랜드
완전생산, 원산지재료생산, 가공공정, 세번변경기준 : 미고려 부가가치기준 : 고려	RCEP

■ 간접재료

구분	「재료」로 보지 않는 협정	원산지재료로 간주하는 협정
해당 협정	아세안, 중국, 베트남	호주, 뉴질랜드, RCEP
원산지 총측 판정	세번변경기준 : 미고려 부가가치기준 : 간접재료를 제조간접비에 계상	세번변경기준 : 미고려 부가가치기준 : 간접재료의 원산지를 따지지 않고 원산지재료비에 계상

■ 대체가능물품

인정범위	상품 및 재료	재료
협정	싱가포르, 호주, 베트남, 뉴질랜드, RCEP	아세안, 중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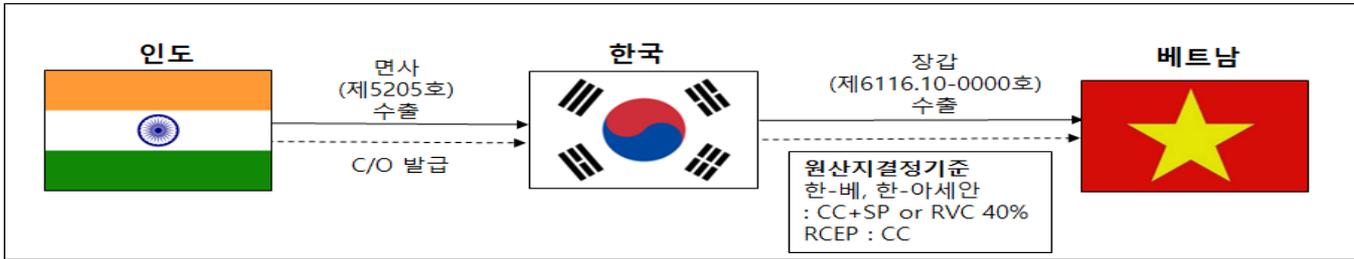
■ 부속품, 예비품, 공구

구분	우리측 기협정
세번변경기준 : 미고려 부가가치기준 : 원산지별로 고려 가공공정기준 : 규정하지 않음	싱가포르, 호주, 중국, 뉴질랜드, 아세안, 베트남
세번변경기준 및 가공공정기준 : 미고려 부가가치기준 : 원산지별로 고려	RCEP

2. RCEP 활용 비즈니스 모델

1

RCEP PSR 완화로 인한 수출 확대 모델(작업용 장감/ HS 6116.10)



칠레	미국	콜롬비아	EU, 터키, 영국	페루	인도
CC(ex HS 5106-5113, 5204-5212, 5307-5308, 5310-5311, Ch 54, 5508-5516, 6001-6006)+ 재 단 및 봉제	CC(ex HS 5106-5113, 5204-5212, 5307-5308, 5310-5311, Ch 54, 5508-5516, 6001-6006)+ 재 단 및 봉제	CC (ex HS 5106-5113, 5204-5212, 5401-5402, 5404, 5407-5408, 5508-5516, 6001-6006)	방사+편성 or 편성+절단을 포함한 완성공정(2조각 이상)	CC(ex HS 5106-5113, 5205-5212, 5306-5311, 540211~540239, 540245~540269, 5404.12~540490, 5406-5408, 5509-5516, 6001-6006) + 재 단 및 봉제	편성(편직) 공정
캐나다	베트남, 아세안	싱가포르, FTA	중국	뉴질랜드, 호주	RCEP
CC+재단/봉제/기타 결합 공정 역내 수행 or CC+편성공정	CC+재단 및 봉제 or RVC(40)	CC(ex 제60류)+ 재 단 및 봉제	CC or RVC40	CC	CC

출처: 각 협정문 PSR 약어 처리

기존 협정 및 RCEP PSR 엄격성 비교(작업용 장감 : HS 6116.10)

- 기발효 협정에서 제61류 편직물의 PSR이 「재단+봉제 공정」이 동반되거나, 「원재료 제한규정」 있어 역외산 사 사용시 PSR 충족이 어려움
- RCEP은 「재단+봉제」 및 「원재료에 대한 제한 규정」을 두고 있지 않아 원산지 충족이 용이함

역외산 면사(HS 5205 및 5206)



편성(재단+봉제 없음) +
고무나 플라스틱 도포침투

제6116.10호



협정별 역외산 사를 사용하여 생산시 원산지 충족여부

총족

세 번 변경 불충족
(재단+봉제 또는 원재료 제한 규정이 있음)

캐나다, 인도, 뉴질랜드, 호주, 중국, RCEP

칠레, 미국, 콜롬비아, EU, 터키, 영국, 페루, EFTA, 베트남, 아세안, 싱가포르

기체결 협정에서 「재단+봉제 규정」 및 「원재료 제한」 규정이 있는 경우 원산지 불충족 사유

- 장갑은 별도의 재단·봉제 없이 편성(Knitting)을 통해 최종 제품 형상을 생산, 기 발효 협정에서 역외산 사(絲)를 사용하여 생산 시 「재단+봉제」가 발생하지 않았고, 역외산 사 사용을 제한하는 협정도 있어, 협정관세 혜택이 있어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어려움
- 이에 원산지 충족을 위해 역내산 사를 생산하는 공정부터 수행하거나, 부가가치기준(베트남, 아세안과의 협정)을 활용해야 하므로 원산지판정 / 원산지관리 / 원산지 증빙서류 관리의 복잡성 발생

RCEP PSR 완화로 인한 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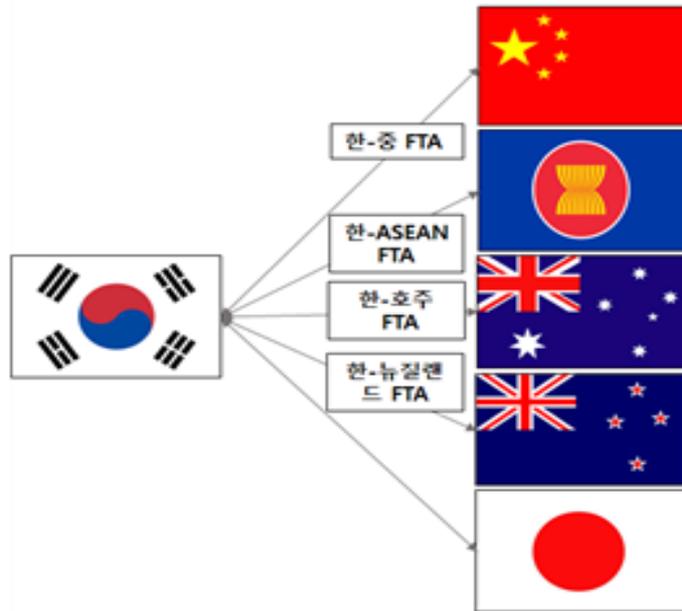
- RCEP은 원산지 결정기준이 CC로 역외산 사(絲)를 사용하여 작업용 장갑을 생산하여도 쉽게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
- RCEP은 기 발효 협정에서 요구하는 「재단+봉제」 또는 「원재료 제한 규정」이 없어 역외산 사(絲)를 사용하여도 원산지충족
- RCEP 원산지결정기준 완화로 원산지 판정·관리·검증 대비 절차 등이 간소화 됨
- 기존 협정의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에서 요구하는 「역내산 사(絲) 생산 공정」수행여부 및 「부가가치기준」을 통하여 원산지를 판정할 필요가 없어, 역내산 사(絲) 생산 입증 및 부가가치기준 충족 입증을 위한 원가 자료 작성 및 관리가 불필요

시사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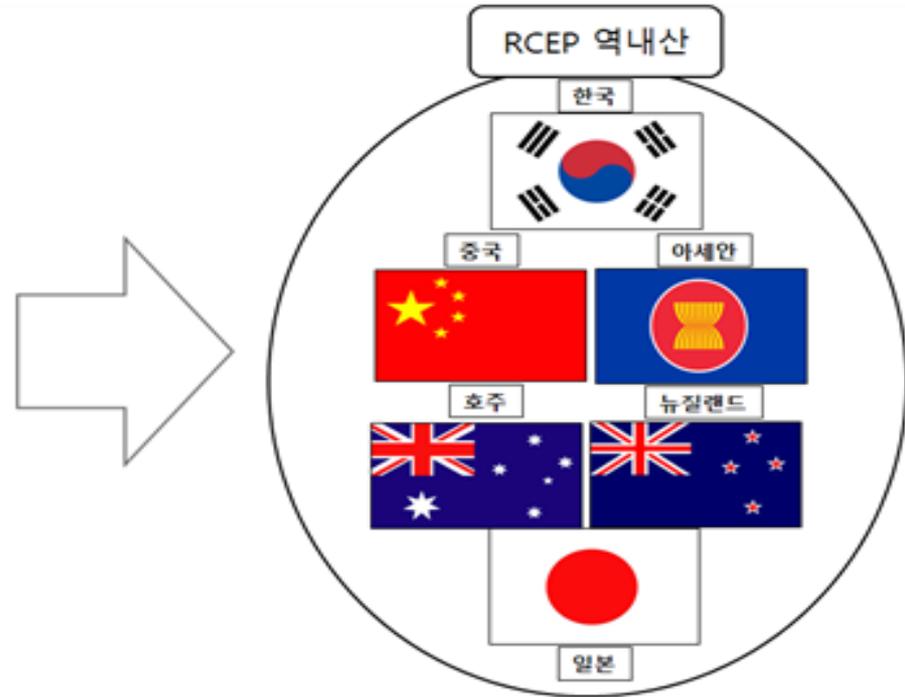
- 기존 협정에서 특혜관세 혜택이 있더라도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인해, FTA 활용을 포기하는 사례 발생
- 완화된 RCEP PSR 활용을 통해 수출 확대 및 원산지 판정/관리의 복잡성 완화 가능

역내영역 확장(누적기준)으로 인한 원산지 충족 용이성 증가 모델

양자협정 체제



다자협정 체제 (RCEP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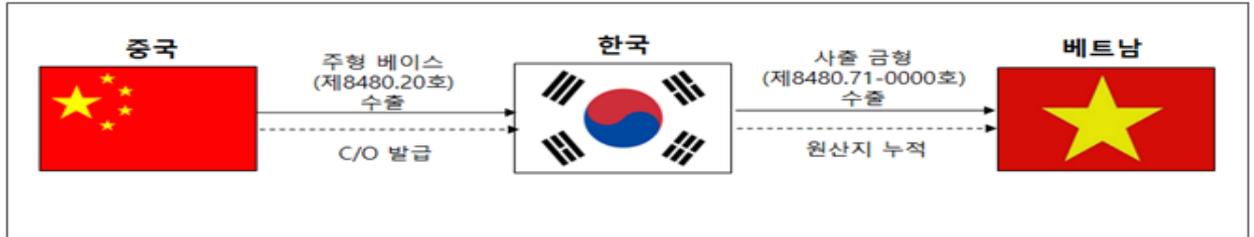
RCEP 역내영역 확장 효과

- RCEP 발효로 15개국 재료가 모두 역내산으로 인정되어 원산지충족이 용이해짐

사례 1. 역내 확장

RCEP 및 한-아세안 PSR
CTH or RVC 40%

품목명	고무나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(사출식이나 압축식)
HS Code	8480.71-0000



구분	품명	HS 코드	단가(원)	원산지
BOM	A	8480.20	3,000	중국
	B	8480.71	1,000	한국
	C	7326.90	1,000	베트남
	D	7226.91	3,000	미국
	E	7226.91	1,000	일본
기타 경비		-	1,000	-
합계		베트남 수출시 한-아세안 FTA 활용	10,000	-

- (세번변경기준) 역외산 원재료는 A(중국), D(미국), E(일본)로, 이중 A(중국) 부품의 세번이 변경되지 않아 원산지 불충족
- 최소허용수준(미소기준)을 적용하여도 $3,000/10,000 \times 100\% = 30\%$ 로 원산지 불충족*(한-아세안 FTA 일반품목군 최소허용수준 충족 비율 : 10%)
- (부가가치기준 : 공제법) A(중국), D(미국), E(일본) 원재료는 비원산지재료비에 계상 ($10,000 - 7,000(\text{비원산지 재료비}) / 10,000 \times 100\% = 30\%$ 로 원산지 불충족)

베트남 수출시 RCEP 활용 효과

- (세번변경기준) 세번변경충족 여부 확인 결과 역외산 원재료는 D(미국)로, 4단위 세번이 변경되므로 원산지 충족(중국산, 일본산, 베트남산 재료는 누적기준을 적용 받아 역내산 재료로 취급됨)
- (부가가치기준 : 공제법) 추가로,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해 보면, A(중국), D(일본)는 원산지재료로 인정 받으며, 미국산 부품만 역외산 재료로 취급 ($10,000 - 3,000(\text{비원산지재료}) / 10,000 \times 100\% = 70\%$ 로 원산지 충족)

사례 2. 단일원재료 사용

RCEP 및 한-아세안 PSR
CTH or RVC 40%



○ 한국의 생산자 A는 일본에서 윤활유기유(제2710.19호)를 수입하여 자동차용 엔진오일(제2710.19)을 생산 중국과 베트남으로 수출함

협정	RCEP	한-아세안 FTA	한-중 FTA
원산지 결정기준	CTH or RVC 40%	CTH or RVC 40%	CTSH

주요 원재료	품명	HS 코드	주요 수입국
	윤활유기유	2710.19-5020	아세안, 일본, 러시아, UAE, 카타르

원산지 판정 (RCEP 발효 전)

○ 주요 원재료인 **역외산 윤활유 기유(제2710.19호)**는 자동차용 윤활유(제2710.19호)와 **6단위 세번이 같아, 중국 및 베트남 으로 수출 시 세번변경 기준을 충족할 수 없음**

원산지 판정 (RCEP 발효 후)

○ RCEP 15개국의 원산지상품은 원재료재료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, **일본산 윤활유 기유는 역내산 재료로 취급받아 중국 및 베트남으로 수출 시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아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됨**

RCEP 역내영역 확장 효과

-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**단일의 원산지 재료(RCEP 1개국 원산지상품)**를 제조·가공하는 산업에 활용 가능한 모델로,
- **RCEP 15개국으로 수출하여도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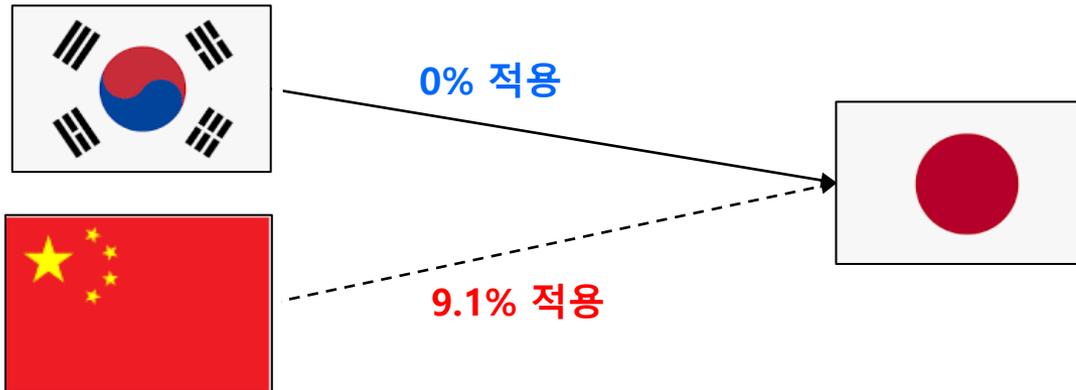
양허세율 차이로 인한 역내 경합 산업(품목) 수출확대 전략

섬유산업

- 역내 경합산업(품목)에 대하여 양허세율 차이를 활용한 수출 확대 전략 가능
- 우리나라 섬유제품 일본 수출 시 역내에서 중국이 동일 산업내 경합 국가로 판단됨
- 일본은 중국 섬유 제품(사, 직물)에 대하여 10년 단계 철폐 품목이 많으며, 우리측 물품에는 발효 즉시 0% 적용

HS(중국 2012)	품목	기준 세율	일본의 RCEP 발효 1년차 세율	
			뉴질랜드, 아세안, 호주, 한국	중국*
5407.92.099	합성필라멘트사 직물	10%	0%	9.1%

* 일본은 RCEP에서 중국 물품에 10년 단계 철폐로 양허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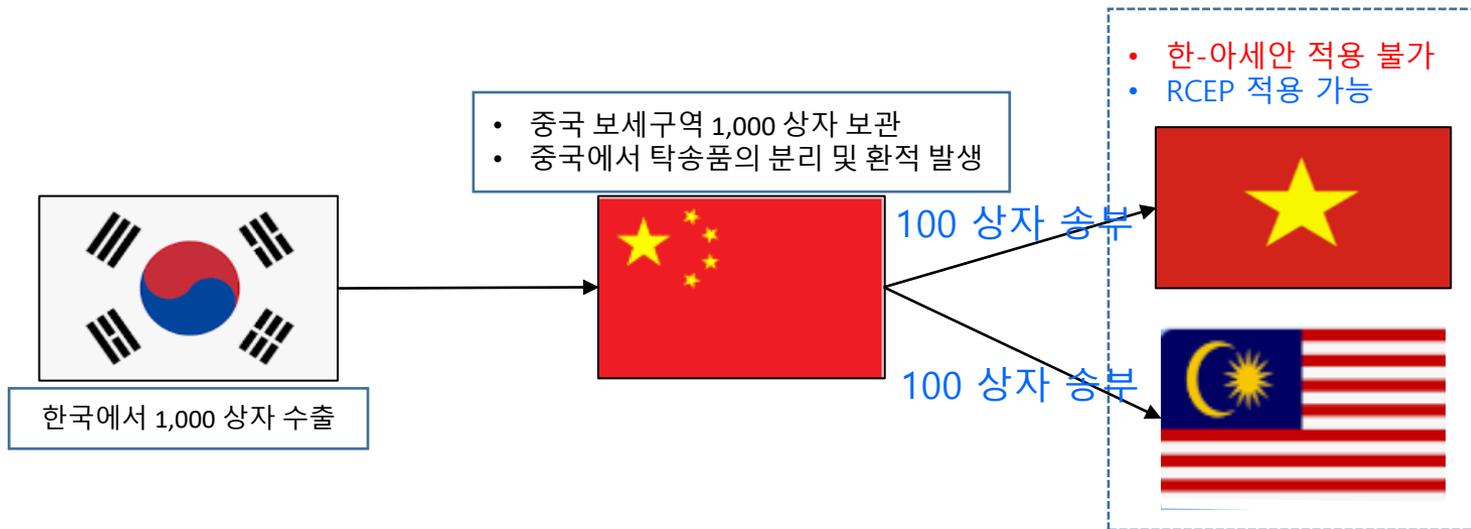
RCEP 활용 효과

- 역내 경합산업(품목)의 양허세율 차이가 발생하는 품목에 대하여 수출 확대 가능
- * 인도네시아·말레이시아·필리핀·태국·베트남·중국·일본 등에 수출시 활용 가능한 전략

연결 원산지 증명을 통해 직접운송 충족 및 물류비용 부담 절감 전략

기존 협정의 운송요건 엄격성

- 기존 협정은 엄격한 직접운송 규정을 채택하고 있는 협정이 많음(운송요건 위배 시 특혜적용 불가)
- 한-아세안 FTA에서는 통과선하증권 제출 및 경유국에서 소비 및 거래를 금지하고 있어, 해당 사례 특혜관세 적용 불가



RCEP 활용 효과

- 제3.19조 연결 원산지 증명에의해 역내 당사국(중국)에서 「탁송물 분할」 및 베트남 및 말레이시아 국내법에서 요구하는 「라벨링」등의 작업 가능하므로, **상기 운송 루트로 협정 적용 가능**
- * 연결원산지증명 : 최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기초로, 역내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
- (RCEP 직접효과) 직접운송 완화 효과, 물류 거점 지역 활용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
- (RCEP 간접효과) 역내 라벨링 산업 또는 항공·해상 환적 산업 활성화

참고. 한-아세안 및 RCEP 연결원산지증명 비교

한-아세안 연결원산지증명 규정	RCEP 연결원산지증명 규정
<p>제 7 조</p> <p>1. 원산지증명서는 부속서 3의 의미 내에서 수출상품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언제나, 모든 요구 서류의 제출을 조건으로 선적 전,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(신고 선적일부부터 3근무일 이내)에 발급된다.</p> <p>2. 중간 경유 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상품이 그 영역을 통과하는 동안 수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연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</p> <p>가.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할 것</p> <p>나. <u>중간 경유 당사국의 수입자와 중간 경유 당사국에서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가 동일할 것, 그리고</u></p> <p>다. 제14조에 규정된 검증절차가 적용될 것</p>	<p>제3.19조 연결 원산지 증명</p> <p>1. 제3.16조(원산지 증명)를 조건으로, 중간 경유 당사자의 발급 기관, 인증수출자 또는 수출자는 연결 원산지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. 다만,</p> <p>가. 유효한 원산지 증명 원본 또는 그 진정 등본이 제시될 것</p> <p>나. 연결 원산지 증명의 유효기간이 원산지 증명 원본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</p> <p>다. 연결 원산지 증명에 부속서 3-나(최소 정보 요건)에 따른 원산지 증명 원본의 관련 정보를 포함할 것</p> <p>라. 재포장 또는 하역, 재선적, 보관, <u>탁송물의 분리나 수입 당사자의 법, 규정, 절차, 행정적 결정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된 라벨링</u> 같은 물류 활동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상품을 수입 당사자에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을 제외하고, 연결 원산지 증명을 사용하여 재수출될 탁송물은 중간 경유 당사자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을 것</p> <p>마. 분할 수출 선적의 경우, 그 분할 수출 수량은 원산지 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대신하여 제시되고, 분할 선적에 따라 재수출된 전체 수량은 원산지 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, 그리고</p> <p>바. 연결 원산지 증명상 정보는 원산지 증명 원본의 발급일 및 발급 번호를 포함할 것</p> <p>2. 제3.24조(검증)에 언급된 검증 절차는 연결 원산지 증명에도 적용된다.</p>

감사합니다.
